

제 294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6. 7. 23.)

조례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목 차

1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	법령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4
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 구 교 육 과	24
4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행 복 나 눔 과	36
5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행 복 나 눔 과	50
6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행 복 나 눔 과	55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7.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7. 10.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신고포상금 지급의 신청 및 방법을 정함(안 제11조)
- 나. 신고포상금의 환수를 정함(안 제12조)
- 다. 신고포상금관련 비밀유지 등을 정함(안 제13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500천원 편성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6. 15.~7. 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의 필요성

- 정부는 지난 3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 (①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②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③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대폭 강화, ④ 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⑤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을 논의함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

- 기업형 브로커, 보조금 사적편취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 제재금은 부정이익의 8배, 신고포상금은 환수금액의 30%로 상향
- 온오프라인 부정수급 제보 채널 개설
-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정수급 여부, 제재 범위 등을 심의
- 보조금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지방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같이 통합 관리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부정수급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나. 관계 법령 검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지급시기, 지급기준 및 공동신고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참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 신고 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 신고 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2. 당초 신고 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 포상금이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 지급액을 지급할 것. 이 경우 최소 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해당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환수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또한, 신고포상금의 환수 및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53호) 제32조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음.

다. 개정안 검토

○ 해당 개정조례안 제11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품권 지급의 경우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거창사랑상품권을 포상금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치법규와의 저촉 사항은 없음.

〈참고〉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 및 환수) 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안 제12조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동일 사항에 대한 중복 및 착오 지급 등의 경우에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2조제3항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포상금 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는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살펴보면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반환명령 금액 등의 30퍼센트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비용추계서에는 신고포상금을 50만원만 산정하고 있을 뿐, 예상 신고 건수, 예상 환수 금액, 과거 부정수급 발생현황 등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비용추계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신고포상금 산정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라. 종합 검토

- 해당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위배됨이 없으며, 신고포상금 지급제도의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조례 시행 이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은 관계 법령과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반영·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문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대상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분 류	적용 범위(행위)
허 위	허위등록, 허위신청, 허위증빙, 허위계약, 서류조작, 카드깡 등 (예시 : ○○업체 대표는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을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약 1억 4,695만원 부정편취)
공 모	편중거래, 내부거래, 부정당업체 계약, 특혜선정, 내부자공모, 거래처공모 등 (예시 : ○○지역 지자체협의회는 신청한 보조사업이 `11년, `12년 연속 부적정 평가를 받고 `13년 사업 실적이 없었으나, 공무원과 공모로 매년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3년간 5천 6백만원의 보조금 지원)
임의처리	무단담보, 무단양도, 무단임대, 임의처분, 무단인출, 무단사용(보육료, 바우처) 등
가족간거래	가족선정, 가족지급, 가족채용, 가족등록 등
관리미비	자격관리, 평가관리, 기준관리, 선정관리, 타당성 미검토, 정산관리, 집행 관리 등 (예시 : 사업계획이 불가능함에도 별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
업무미숙	처리 미숙, 지침 미숙지, 절차 미숙, 사용 미숙 등
증빙미비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내역(영수증), 기타증빙 등
착 오	행정착오(행정담당, 수급자), 거래처 착오, 판단 착오, 인식 착오 등 (예시 : 수급자가 기타수익(이자수입)이 있음에도, 수급 자격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 후 급여를 지원받음)
중복처리	중복등록, 중복신청, 중복선정, 중복청구, 중복증빙, 중복결제 등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수당

나. 관련 조문

-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안 제5조)
- 2) 신고포상금의 지급신청 등(안 제1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나. 2026년 추계: 1,700천원

- 1)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500천원 편성 예정
- 2)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수당
가) 12명*1회*100천원 = 1,200천원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3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778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할 것.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시행 2026. 1. 1.] [행정안전부예규 제353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32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의견26-0065

질의제목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고, 신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거창군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관련문서 : 경상남도 거창군 기획예산담당관-2539(2026. 2. 3.)

1. 질의요지

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고, 신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거창군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요건·지급액·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해당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¹⁾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내용을 거창군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1) “그 밖에 해당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소 모호하나, 거창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심의사항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17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어야 할 것입니다²⁾.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른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고, 신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지방보조금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법령에서 정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은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고포상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신고의 방법과 내용이 적절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고 신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신고포상금의 지급 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행정기본법」 제17조제4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³⁾.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고, 신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

2) 법제처 2026. 2. 9. 의견제시 26-0043 참고

3) 지방보조금법 제9조제1항은 지방보조금에 대해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 신고포상금도 지방보조금으로 보아 제9조제1항을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행정안전부 담당자 통화 결과, 신고포상금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견이 있어, 이 사안에서는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음

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6항에서 지방보조금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의 처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근거가 없어도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점⁴⁾을 고려할 때, 처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규칙의 형식으로도 신고포상금의 지급 조건에 관해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거창군 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이나 행정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⁵⁾.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제1호),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제4호),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제7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심의사항은 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설치되므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신고포상금의 지급요건·지급액·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해당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사항인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지방보조금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칙의 입법의도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과는 다른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면,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⁶⁾.

4)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법제처,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2021, 67쪽 참고

5) 법제처 2012. 10. 17. 의견제시 12-0314 참조

따라서,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심의사항을 추가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거창군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 2005다65500 판결: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대법원 1997.3.11. 선고 96다49650판결, 대법원 2004.3.25. 선고 2003더12837판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두6663판결 등 참조)~

6) 법제처 2012. 10. 17. 의견제시 12-0314 참조

법령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7.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7. 10.

2. 제안이유

-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 과제 정비,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해 1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부합동평가) 법령불부합 정비(안 제1조·제2조)

- 1)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나. (정부합동평가) 사업자차별 규제 개선정비(안 제3조)

- 1)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 “우선” 삭제

다.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안 제4조~제17조)

- 1)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거창담당관 ⇒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 2)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특허청⇒지식재산처,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상업등기법」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정부조직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6. 2.~6.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개요

- 해당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라 변경된 법령명, 행정기관 명칭, 인용조문 등을 현행화 하고, 일부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령불부합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일괄 개정 방식 및 조례안의 일괄 개정 사항

- 해당 개정조례안이 채택한 일괄 개정(정비) 방식은
-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조직 개편, 법령명 및 행정기관 명칭 변경, 인용조문 정비 등 공통된 개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개별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은 유지하면서 개정 대상이 유사한 여러 조례를 하나의 조례안으로 함께 개정하려는 것으로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도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입법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 조례의 실질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의 효율성과 자치법규의 체계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널리 활용함.
- 따라서, 해당 개정조례안은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령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법령명, 행정기관 명칭 및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의 제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령 불부합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괄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이나 정부조직 개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향후에도 법령불부합 사항이 누적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자치법규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정비대상 조례와 조문

조항 번호	정비대상 조례명	해당 조례 조항	현 행	개 정
제1조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2조제2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2조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제2 항제2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3조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제명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거창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	우선 구매	구매
		제3조	우선구매에 대해	구매에 관하여
		제4조제1항	우선구매	구매
		제5조제1항	우선구매 촉진	구매촉진
		제5조제1항 제1호	우선구매	구매
		제6조 조 제목	지역상품 우선구매	지역상품 구매
		제6조제1항	우선구매	구매
		제6조제2항	우선구매	구매
제4조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제3호	353방첩부대 방첩관	국군 339방첩부대 방첩관
		제3조제2항 제4호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거창담당관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제3조제8항 제3호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9862부대 3대대 동원담당 과장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동원과장, 거창군 예비군 지역대장
제5조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특허청	지식재산처
제6조	거창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9조제1항	특허청장	지식재산처장
제7조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2조제2항	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8조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14조제2항	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14조제3항	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9조	거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10조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조	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11조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4조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2조	거창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6조제1항	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6조제3항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제14조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제4호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거창군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4조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제7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제15조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제4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제16조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제1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제38조제1 항제2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제17조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10”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레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② ~ ③ (생략)

□ 행정안전부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2025. 1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1. 추진 배경

○ 상위법령에서 법령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법령-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 필요

2. 정비 기준

○ 법령-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2008년 제정)
- 법령 제·개정 이후 자치법규 상 용어가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맞게 정비

3. 주요 정비 내용

①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정비필요성) 2008년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이 형태의 등기부를 기초로 한 ‘등·초본’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여 등기기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
- 일상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근거법령 및 정부24 등 민원처리 시스템에서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비 필요

정비 전(사례)	정비 후(예시)
제0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0. "지역 건설사업자"란 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고 건설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제0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0. "지역 건설사업자"란 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고 건설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27년 2월)

* 2027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지표 반영 완료

□ '27년('26년 실적)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매뉴얼

1. 지표명: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개선을

2. 지표설명: 진입규제, 차별적규제, 가격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안전 저해, 소비자 선택제한 등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의 개선을

제한유형	조례명	현행조문	개선방안
사업자차별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명: 지역상품 <u>우선</u> 구매 제1조 상품을 <u>우선</u> 구매하도록 제3조 지역상품 <u>우선</u> 구매에 대해 제4조 ① 지역상품 <u>우선</u> 구매를 제5조 ① 지역상품 <u>우선</u> 구매 촉진을 제6조(지역상품 <u>우선</u> 구매) ①지역상품 <u>우선</u> 구매 협조를 ② 지역상품을 <u>우선</u> 구매하도록	"우선"이라는 표현을 장려, 적극, 촉진, 홍보, 지원 등으로 수정 혹은 삭제

□ 「정부조직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제23조(기획예산처) 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② 기획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8조(지식재산처) ①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식재산처를 둔다.

② 지식재산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9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외교부

- 5. 통일부
- 6. 법무부
- 7. 국방부
- 8. 행정안전부
- 9. 국가보훈부
- 10. 문화체육관광부
- 11. 농림축산식품부
- 12. 산업통상부
- 13. 보건복지부
- 14. 기후에너지환경부
- 15. 고용노동부
- 16. 성평등가족부
- 17. 국토교통부
- 18. 해양수산부
- 19.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7.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7. 10.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거창군 고향올래사업 로컬유희 거주·공용공간 조성

1. 제안이유

- 2025년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로컬유희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 유치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공용공간 조성하여 체류형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거창군 고향올래사업 로컬유희 거주·공용공간 조성
- 2) 총사업비 : 1,530.5백만원(특교세 1,000백만원, 군비 530.5백만원)
- 3) 사업기간 : 2025. 8. ~ 2026. 12.
- 4) 사업위치 :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109-10
- 5) 주요내용: 로컬유희 거주 및 공용공간 조성(2층, 연면적 435.02㎡)
 - 1층 : 주민공동시설 1호(66.24㎡), 단독주택 2호(60.03㎡, 61.2㎡), 계단실 1호
 - 2층 : 단독주택 3호(66.24㎡, 60.03㎡, 61.20㎡), 계단실 1호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사업내용	비고
		소재지	지목 (형식)	면적				
계					435.02	1,530,500		
취득	건물	북상면 갈계리 1109-10	건물 1동 (지상2층)	435.02	1,530,500	2026. 9.	로컬유학 거주·공용공간 조성 (단독주택 5호, 주민공동시설 1호)	신축

다. 추진경과

- 1) 2025. 5. :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사업 공모 선정
- 2) 2025. 8. ~ 11. : 로컬유학 거주·공용공간 조성 건축기획 용역 시행
- 3) 2025. 12. : 로컬유학 거주·공용공간 조성 공공건축 심의
- 4) 2026. 1. ~ 5. : 로컬유학 거주·공용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 시행

라. 향후계획

- 1) 2026. 7. ~ 11. : 공사 착공 및 준공
- 2) 2026. 12. ~ : 로컬유학 시설 및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운영

마. 기대효과

- 1) 로컬유학을 위한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2) 거창군 로컬유학 활성화로 교육도시 거창 브랜드 이미지 강화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 【붙임2】 참조

4. 관련도면 : 【붙임3】 참조

5. 관계법령 : 【붙임4】 참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3. 검토의견

① 거창군 고향올래사업 로컬유희 거주·공용공간 조성

가. 제안이유

- 해당 계획안은 거창군이 2025년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로컬유희학생과 그 가족의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공용공간을 조성하고,
- 이에 따른 건축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련법령 검토

- 취득 대상은 연면적 435.02㎡의 지상 2층 건축물 1동으로, 총사업비는 15억 3,050만원(특별교부세 1,000백만원, 군비 530.5백만원)이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취득재산의 경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에서 정한 군의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됨.
- 또한,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소요 예산 및 기준가격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

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다. 사업의 필요성

○ 해당 사업은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교육도시 거창의 경쟁력 강화 및 북상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업 목적과 정책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북상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과 도보 통학이 가능한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부지 기확보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안정성이 도모됨.

라. 종합검토

- 해당 사업은 그간 업무보고,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사업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당초 사업계획(연면적 369.6m²)과 비교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65.42m²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된 사업규모 사유와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감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향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시설의 운영주체, 관리방식,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및 활용계획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붙임1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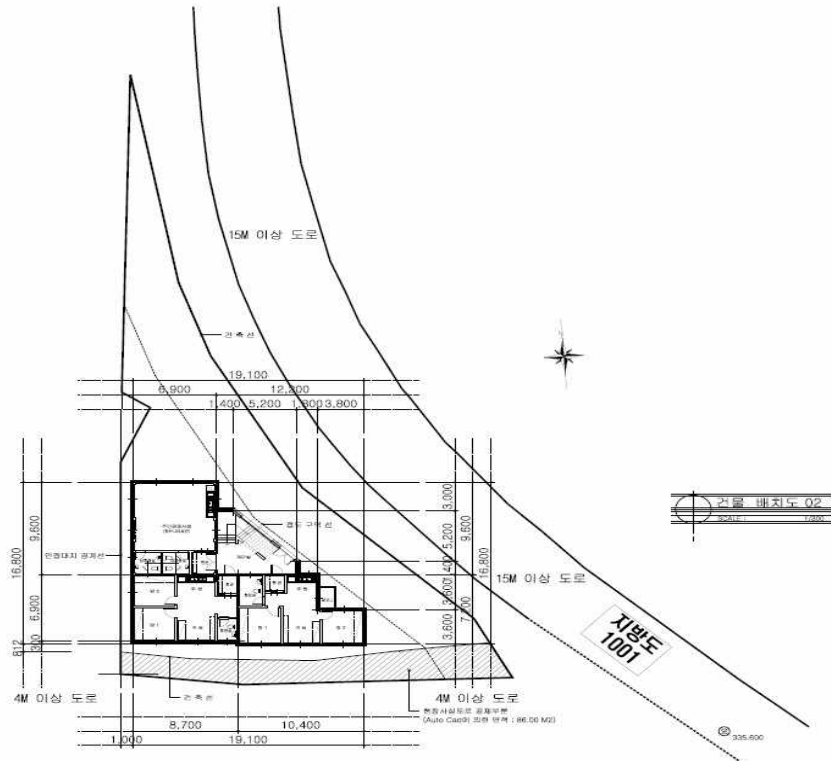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1,530.5	
공사비	• 공사비 : 1,348.5백만원 - 건축비 : $435\text{m}^2 \times 2,392\text{천원}^* = 1,040,502\text{천원}$ $\times$ 2026년 표준건축비 : 2,392천원 - 진출입 도로 조성, 조경, 예비비 등 : 307,998천원	1,348.5	
설계비 등	• 설계비 : 68백만원 • 건축기획 : 4백만원 • 현황측량(토목) : 5백만원	77	
부대비	• 부대비 : 5백만원	5	
자산 취득비	• 거주공간 싱크대 등 기본 구성 구입비 : 50백만원 - 거주공간 5호 $\times$ 10,000천원 = 50,000천원 • 공용공간 테이블 등 물품 구입 : 50백만원 - 공용공간 5호 $\times$ 10,000천원 = 50,000천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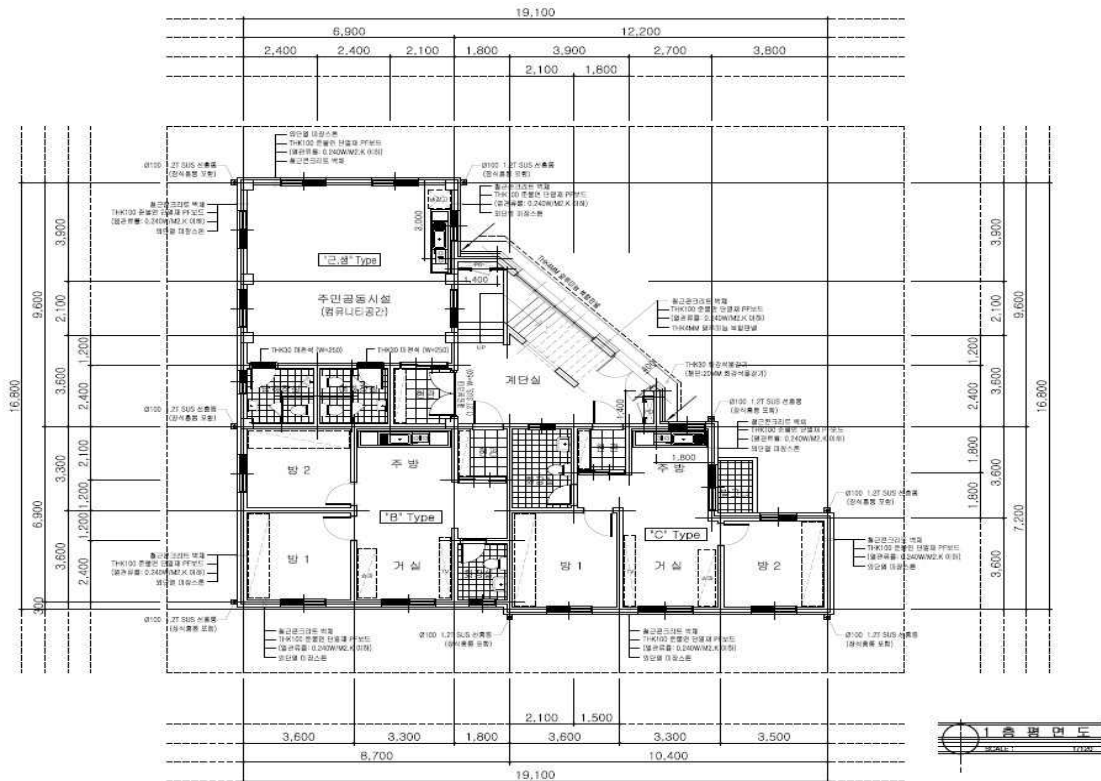
위 치 도(북상면 갈계리 1109-10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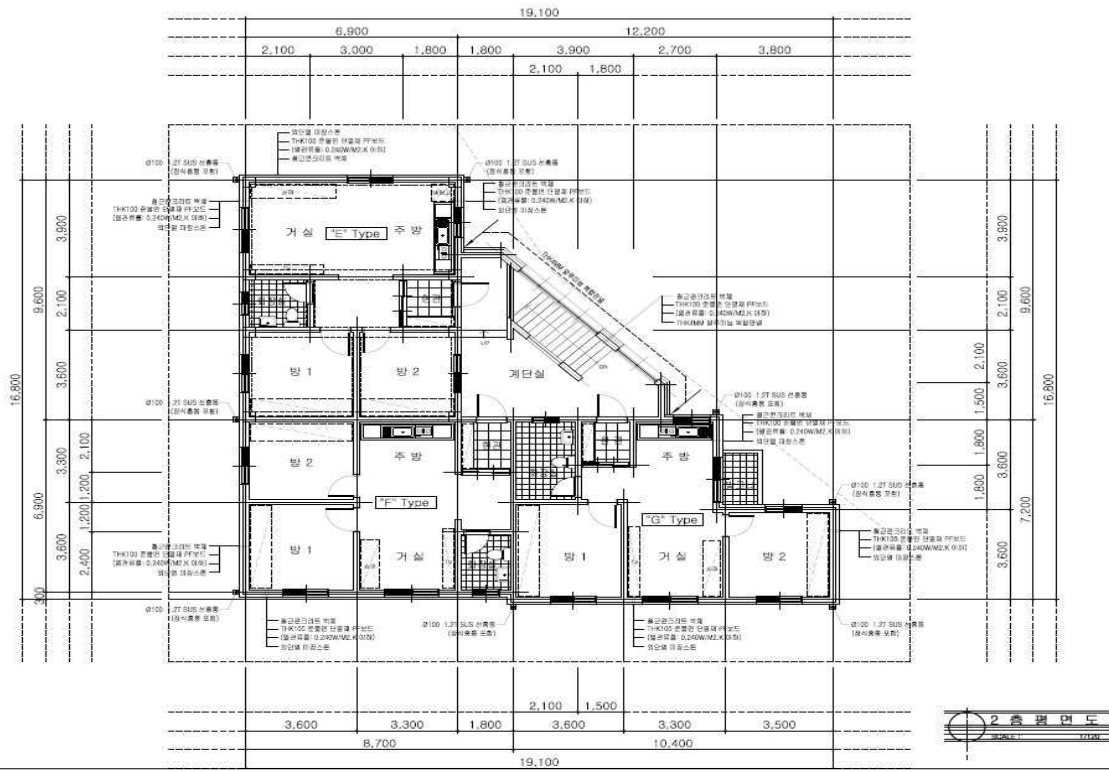
현 장 사 진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7.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7. 10.

2. 제안이유

-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기간이 2026.10.7. 만료됨에 따라 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 위탁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 설 명: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 나. 위 치: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
- 다. 시설규모

구분	부지	건물			정원		비고
		계	공장	창고	종사자	근로자	
현황	6,612㎡	2,201㎡	1,200㎡	1,001㎡	8명	36명	

- 라. 사업내용: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 마. 위탁대상 사무
 - 1) 운 영

- 장애인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응 훈련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2) 시설물 관리: 장애인근로사업장 건축물, 기계설비, 차량, 물품 등
 바. 위탁방법: 공개모집

사.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아. 소요예산

- 1)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79조(비용 부담)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1)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기회 마련
- 2) 사회적응 및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나. 관계법령

- 1) 시설의 종류 및 기능: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3호
 -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2)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 3) 운영신고 서류 및 위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창군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다. 향후계획

- 1)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2026. 7월 임시회
 - 2)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2026. 8월
 - 공개모집/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결정(9명 이하)
 - 3) 위·수탁 협약체결: 2026. 9월
 - 4)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위·수탁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 라. 소요예산(2026년): 547,112천원(도 20,508 군 526,604)
- 1)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 및 인건비 편성
- 마.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위탁운영계획: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해당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 중인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의 위탁기간이 2026년 10월 7일 만료됨에 따라,
-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참조〉 검토의견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3호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근로사업장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일반 작업환경에서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임.

○ 이에,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와 지속적인 시설 운영이 요구 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3호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은 과거 운영법인의 수탁 포기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겪었으나, 정상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왔으며,
-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 생산설비 확충 및 직업재활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근로기회와 소득을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시설 특성과 운영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해당 동의안은 위탁대상 사무, 위탁방법, 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운영예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개모집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민간위탁 추진 절차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 제79조에 따른 비용 부담 규정에 따라 재원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 2026년 소요예산 : 547,112천원(도 20,508 군 526,604)

□ 장애인복지법

제79조(비용 부담) ①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 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30.>

- 따라서 해당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충족하고 있으며,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1 추진 배경

- 장애인근로사업장 현 위탁기간의 위탁기간 종료 : 2026. 10. 7.
-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장애인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운영법인 모집 공고 등 절차 추진

2 관련 근거

-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위탁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시설현황

- 시설명 :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시설장 이재원)
- 소재지 :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
- 위탁법인 : (사)경상남도 장애인부모연대(대표자 윤종술)
- 수탁기간 : 2021. 10. 8. ~ 2026. 10. 7 / **2026.10.7. 수탁기간 만료 예정**
- 시설규모 : 건물(지상1층) / 연면적 2404.0㎡, 부지 6611.6㎡
- 예산현황 : 547,112천원(도 20,508, 군 526,604) / 2026년 기준
- 위탁내역

<연도별 현황>

- | | |
|-----------------------------|--------------|
| ▶ 2013. 7. ~ 2018. 2. /4년 |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
| ▶ 2018. 10. ~ 2021. 10. /3년 | (사)경남장애인부모연대 |
| ▶ 2021. 10. ~ 2026. 10. /5년 | (사)경남장애인부모연대 |

- 주요사업내용
 - 포장·제작 사업 : 지역기업과 협력하여 상품 포장 박스 제작
 - 생산 및 납품 활동 :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제조·포장 업무
 -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직무 능력 향상과 사회 적응 훈련 병행

□ 종사자 현황

계	종사자				근로자		비고
	시설장	재활교사	사무원	생산판매 기사	장애인	일반	
44명	1명	3명	1명	3명	32명	4명	

□ 매출 및 순이익 현황

○ 연도별 매출현황

(단위: 천원)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3월)
매출액	2,232,773	2,238,166	2,005,210	2,362,461	403,038

○ 연도별 순이익 현황

연도	2019~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누계
금액	96백만원	41백만원	41백만원	56백만원	346백만원	580백만원

○ 현금성 자산 보유현황

(2026. 5 기준/ 단위 : 천원)

수익금 통장잔고 (a)	미수금 (b)	완제품 재고량 (c)	원자재 재고량 (d)	미지급액 (e)	합 계 (a+b+c+d)-e
183,772	116,075	300,786	407	153,563	447,477

□ 운영자금 교부 및 상환 현황

(단위: 천원)

반환일자	교부액	반환액	반환잔액	비고
계	700,000	500,000	200,000	
2018.12.24.	200,000	—	—	
2019.10.08.	500,000	—	—	
2022.03.02.	—	50,000	650,000	
2023.06.02.	—	50,000	600,000	
2024.02.07.	—	50,000	550,000	
2025.02.10.	—	100,000	450,000	
2026.01.16.	—	250,000	200,000	

※ 이전 운영법인 수탁 포기 및 경영 악화에 따른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부족으로 반환 조건의 운영자금 지원

□ 그간 추진 현황

- 2020. 12. : 박스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보건복지부)
- 2021. 7. : 쇼핑백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보건복지부)
- 2021. 9. : 창고증축(800백만원) 및 직업재활교사 1명 충원
- 2021. 11. : 2022년 기능보강 후렉스 기계 선정/ 국도비 8억 확보
- 2022. 11. : 비가림 설치 공사 완료
- 2023. 5. : 지게차 및 1톤 트럭 구입
- 2024 . 6. : 전기화물 트럭 구입
- 2024 . 8. : 걸포장기계 및 물품결속기계 구입
- 2024. 12. : 전기증설공사 및 옥내소화전 설치 완료
- 2025. 5. : 2026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 2025. 10. : 2026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
- 2026. 6. : 2026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실시설계

4 향후계획

- 운영법인 및 기간
 - 운영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
 -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
- 추진일정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6. 7월 임시회 중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6. 8월
 - 선정심의회 개최 : 2026. 9월
 - 공개모집/민간위탁심의회위원회 심사 결정(9명 이하)
 -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9월 말

5 기대효과

-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지원 기회 제공
- 자립능력배양 및 안정적인 소득보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에 기여

가 시설의 종류 및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3호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설치 및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위탁운영)

- ① 군수는 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근로사업장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며,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7.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7. 10.

2.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편 노인들의 개인 위생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사업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대상사업: 거창군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
- 나. 위탁사무
 - 1)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 1대
 - 2) 위탁차량 관리와 차량운행 업무 등 사무관리
 - 3) 이동목욕차량 이용자 선정 및 관리
- 다.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 라. 위탁방법: 공개모집
- 마. 수탁자격: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사회복지법인 등이 수행 가능
- 바.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1)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을 받지 못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게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위생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나.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다. 향후계획

- 1)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2026. 7월 임시회
- 2)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2026. 11월
- 3) 위·수탁 협약체결: 2026. 12월 중

라. 소요예산(2026년): 43,831천원(군 43,831) ※ 인건비 및 운영경비

마. 위탁운영계획: 따로붙임

5. 검토의견

- 해당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이동 목욕차량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이동목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참조〉 검토의견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목욕과 건강 상태 확인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이용자의 특성과 복지 수요에 대한 이해와 현장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무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제출자료에서도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생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 이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위탁대상 사무, 위탁기간, 위탁방법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제시와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민간위탁 추진 절차 또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이동목욕차량은 2014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위생 관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됨.
- 따라서 해당 동의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갖추고, 전문성을 활용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7.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7. 10.

2. 제안이유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과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대상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
- 나. 위탁참여인원: 18명(예정)
- 다. 위탁사무
 - 1)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 참여형 업무 수행
 - 2) 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교육·훈련·사후 관리 등 업무 수행
 - 3) 참여자 근태관리 및 인건비 지급
- 라.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마. 위탁방법: 공개모집

바. 수탁자격: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사회복지법인 등이 수행 가능

사.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1)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직무능력과 직업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나. 관계법령

-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4)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p.46~47, p.69

다. 향후계획

- 1)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2026. 7월 임시회
- 2)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2026. 11월
- 3) 위·수탁 협약체결: 2026. 12월 중

라. 소요예산(2026년): 103,202천원(국 21,658, 도 6,497, 군 75,047)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경비

마. 위탁운영계획: 따로붙임

5. 검토의견

- 해당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참조〉 검토의견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복지일자리 참여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장애인의 특성과 직업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계속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온 사업인 만큼, 기존 수탁기관의 사업 운영실적과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합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사업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 추진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p.46~47, p.69
- 위탁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위탁참여인원 : 18명(예정)
- 위탁내역

<연도별 현황>

- ▶ 2021. 1. 1. ~ 2023. 12. 31. / 3년 (사)경상남도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 ▶ 2024. 1. 1. ~ 2026. 12. 31. / 3년 (사)경상남도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 추진방법 : 민간위탁(공모)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 사업비 : 103,202천원(국 21,658, 도 6,497, 군75,047)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경비

2 근무조건

- 근로내용

직무명	직무내용	참여인원	비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14명(26)→16명(27)	2명 증가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공공장소, 다중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2명	'27년 위탁추진

- 근로조건 및 보수(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와 동일 지원)
 - 근무시간 : 월 56시간이내(주 14시간 이내, 1일 5시간이내)
 - 월보수액 : 월 577,920원(시급 10,320원, 퇴직금 없음)
 - 가입보험 : 산재 및 고용보험

3 추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6. 7월 임시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6. 11월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 2026. 12월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수탁대상 기관 : 장애인일자리 관련 수탁 희망기관
-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12월 중
- 장애인일자리사업 시행 : 2027. 1월 중

4 기대효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
 - 민원 발생이 많은 업무 특성상 위·수탁기관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 처리 필요
 - ⇒ 위탁기관(거창군) : 사업총괄, 과태료 부과, 상습 불법 주차구역 관리 등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적 추진

가 장애인복지법

-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p.46~47

3-8.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가. 사업유형별 사업수행기관

사업유형		사업수행기관	
		지자체 직접수행	민간수행기관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
	시간제		
복지 일자리	참여형	○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특수학교 등 ※ 필요시 시·군·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음
특화형일 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	대한안마사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

나. 사업수행기관 모집

1) 시·도 또는 시·군·구는 신규 사업수행기관 모집을 위해 수행기관 모집 공고 시행

- 지자체별 일자리 배정인원, 기존 수행기관 수행 규모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기관을 선정하는 등 적정 민간 수행기관 선정·관리
- 복지일자리에 참여할 신규 수행기관 모집 시 ‘심한장애인 맞춤형 직무(11개, 참고 p.70)를 포함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함을 모집 공고문에 반드시 명시

2)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사업신청서[서식2],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서식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배치기관 연계협약서(해당기관에 한함, [서식40]) 각 1부)

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1) 시·도 또는 시·군·구는 민간수행기관 선정 시 사업수행 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및 담당인력 유무 등을 고려, 민간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서식4]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선정
- 2)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을 재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기간 동안의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선정 적정여부를 심사
 - 현장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주의 또는 제재 조치를 받는 등 부적정한 운영 기관은 재선정 제외
- 3) 수행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별 상황 등에 따라 기간을 달리할 수 있음
- 4) 시·도 또는 시·군·구청은 사업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거나 공문으로 통보
- 5)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은 선정된 민간수행기관장과 사업 협약서[서식5] 작성 및 협약 체결
- 6) 시·도 또는 시·군·구청은 수행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배치기관 확보의 적절성, 담당인력 투입의 적절성, 일자리배정인원 참여율,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성과평가 실시
- 7) 시·도 또는 시·군·구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우선 선발 가능

라. 선정 기관 준수 사항

- 민간수행기관은 「협약서」 및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선정받은 사업에 대한 실적 등록(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성과평가 등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함

마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p.69

Chapter 2 |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2-1. 사업수행

가. 사업수행기관

- 1) 복지일자리(참여형) :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 직접수행 또는 민간수행기관 수행 가능
 -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사회복지법인 등이 수행 가능
 - 2)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 가) 시·도에서는 지역별 사업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
 - 나)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특수교육관련기관(특수학교 등)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직접 수행 가능)
- ※ p.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를 참고

참고 특수교육기관의 정의 및 종류

특수교육기관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항에 명시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의미함

- ① 특수학교: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초·중등교육법 제55조)
- ② 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학급(초·중등교육법 제56조)